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,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제7조(시설의 개방)을 안 제7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2항에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 시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.
- 검토결과,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택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,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나, 우리구민이 인접 시·구의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시, 상호 호혜적 이용의 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,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10 월 일

발 의 자: 김용범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“(시설의 개방)”을 “(시설의 개방 및 이용)”으로 한다.

제7조 “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”를 제7조 제1항을 신설하여 “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설의 개방)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<u>개방하여야 하며</u>, 체육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〈 신 설 〉</p>	<p>제7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